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 근거 명시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2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 근거 명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 근거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교원의 육아휴직 처우 관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 ② (생략) <u><신설></u>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의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에서 준용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사립학교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사무직원의 임용(휴직 포함),¹⁾ 보수 등은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법인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그 외에 사립학교 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1)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조항 비교]

구분	교원	직원
육아휴직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 (제1항제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원의 임신·출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 (제1항)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등은 정관 등으로 정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제1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 수당/급여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 (제3항) 육아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 육아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 등 국·공립 학교 교원의 휴직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 *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 수당 지급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 (제1항)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등은 정관 등으로 정함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2023~2025년)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인원 대비 육아휴직을 한 인원의 비율은 교원이 1.14%이고 직원이 3.69%로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교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의 육아휴직 비율은 직원이 교원 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육아휴직 비율에서 직원이 교원 보다 적게 나타난 것에는, 교원과 달리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관련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육아휴직 현황]

교원	2023			2024			2025		
	전체 (A)	육아휴직 (B)	육아휴직 비율 (B/A)	전체 (A)	육아휴직 (B)	육아휴직 비율 (B/A)	전체 (A)	육아휴직 (B)	육아휴직 비율 (B/A)
유치원	31,009	155	0.50	30,061	219	0.73	29,201	274	0.94
초등학교	1,546	36	2.33	1,554	44	2.83	1,529	32	2.09
중학교	11,955	309	2.58	11,551	259	2.24	11,177	255	2.28
고등학교	32,811	779	2.37	31,357	719	2.29	30,273	757	2.50
대학교	69,027	172	0.25	68,078	208	0.31	67,618	231	0.34
특수학교	2,620	71	2.71	2,612	84	3.22	2,567	73	2.84
법인	-	-	-	-	-	-	-	-	-
합계	148,968	1,522	1.02	145,213	1,533	1.06	142,365	1,622	1.14

직원	2023			2024			2025		
	전체 (A)	육아휴직 (B)	육아휴직 비율 (B/A)	전체 (A)	육아휴직 (B)	육아휴직 비율 (B/A)	전체 (A)	육아휴직 (B)	육아휴직 비율 (B/A)
유치원	2,243	2	0.09	2,046	1	0.05	1,885	7	0.37
초등학교	391	5	1.28	381	2	0.52	384	2	0.52
중학교	2,246	28	1.25	2,255	25	1.11	2,262	27	1.19
고등학교	5,260	48	0.91	5,233	52	0.99	5,259	53	1.01
대학교	173,059	5,230	3.02	166,762	5,626	3.37	178,572	6,906	3.87
특수학교	849	13	1.53	826	7	0.85	817	11	1.35
법인	836	12	1.44	826	6	0.73	815	3	0.37
합계	184,884	5,338	2.89	178,329	5,719	3.21	189,994	7,009	3.69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무직원과 교원의 육아휴직 처우 관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사유’ 등 육아휴직

의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서 육아휴직의 사유 등을 정하는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처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사유 등 육아휴직의 근거에 관해서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114호)과 백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570호)은 제70조의8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근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육아휴직 사무직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함.

□ 둘째, 육아휴직급여 지급 주체의 부담 가능 여부,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처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가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원의 처우를 고려할 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에는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급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한 재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학교 유형별로 재원 확보체계가 상이하므로, 자체 재원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의 부담 가능 여부,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학교 유형별 교직원 육아휴직급여(수당) 재원 현황]

구분	교원		직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유치원	국고(국립), 보통교부금(공립)	보통교부금, 자체 재원	국고(국립), 보통교부금(공립)	자체 재원(원비 등)
초등학교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자체 재원		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자체 재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국고(국립), 지방재정(공립)	자체 재원 (등록금, 기부금 등)	국고(국립), 지방재정(공립)	자체 재원 (등록금, 기부금 등)

자료:교육부

참고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64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휴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214092호)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국가부담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재정 여건이 상이한 사립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계기관의 반대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기본사항은 교원과 동일하게 법률로 규정하되(「사립학교법」 제59조제3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함.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화여자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 제한이 제한되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구보건대학교는 국고 지원 근거 법제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의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